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937
----------	-------

발의연월일 : 2026. 7. 14.

발 의 자 : 홍기원 · 모경중 · 문진석
고민정 · 민홍철 · 김남희
곽상언 · 박균택 · 이소영
박희승 · 주철현 의원
(11인)

제안이유

근래 국회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범죄피해자단체와 여성단체, 법조계 등에서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완전히 폐지될 경우 수사결과에 대한 교차검증시스템이 무너져 공소청이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과 같이 수사기관의 부실·암장 수사 사례를 바로잡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고, 수사기관의 보완수사요구 이행 지연이나 이 과정에서 발생하게 될 수사 공백 등으로 특히 사회적 약자로 분류되는 여성·아동·장애인·노인과 민생범죄 피해자 등이 2차 피해에 노출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음.

한편, 최근 대검찰청이 올해 3월과 4월 전국 12개 검찰청 소속 검사의 보완수사 비율을 실증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 기간 검사가 실시

한 보완수사의 약 80% 이상이 단순한 사실관계 확인이나 누락된 증빙자료 보완 등 간단한 것이었고 강제수사는 약 0.5% 수준에 불과했던 것으로 확인됨.

일각에서는 현행법에 보완수사요구권 규정이 신설된 이후 지난 수 년 동안 실제 사건처리 지연이 심해졌다는 지적이 있는 상황에서, 이를 모두 보완수사요구 절차를 따르도록 한다면 향후 수사기관의 부담 가중은 물론 사건처리 지연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 자명해 간단한 서류 첨부나 사실 확인 등 그 내용이 경미한 수사의 경우에도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음.

이에 검사는 수사를 개시할 수 없도록 하고, 수사기관에 보완수사요구를 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되, 성폭력, 아동·청소년 학대, 장애인·노인 학대·가정폭력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건과 보이스피싱 등 민생사건, 구속사건,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 두 건 이상의 송치사건을 병합할 필요가 있는 병합사건, 간단한 서류 첨부 및 진술·의견 청취 등 보완수사요구 방식으로 처리하기에는 경미한 내용 등 제한적인 범위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인정하려는 것임. 다만, 보완수사에 따른 검사의 권한남용 방지를 위해 강제처분이 필요한 보완수사 시에는 지방공소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보완수사 결과에 대해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공소청법」 제21조에 따라 설치되는 사건심의위원회(50~200명의 민간인으로 구성)의 심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할 경우 우리 국민

들이 겪게 될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중요·긴급사건에 대하여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개시한 경우 사건 정보를 검사와 공유하고, 송치 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공소제기 여부 판단에 필요한 사항을 검사와 협의함(안 제195조의2 신설).
- 나. 검사의 수사개시권은 완전히 폐지하고, 보완수사는 특정강력범죄,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장애인·노인 대상 범죄, 스토킹범죄, 가정폭력범죄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와 전기통신금융사기범죄, 유사수신행위, 다단계판매범죄 등 민생범죄, 또는 병합수사 필요사건, 구속사건, 공소시효 임박사건, 피해자 이의신청사건 등 일정한 유형의 사건에 한하여 송치된 범죄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허용함(안 제196조제1항).
- 다. 검사의 보완수사에서 강제처분, 즉 체포·구속 또는 압수·수색·검증 등을 하는 때에는 지방공소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사건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사후에 사건심의위원회가 그 적정성을 심의하도록 함(안 제196조제2항).
- 라. 검사는 송치사건 중 개정안 제196조제1항 단서 각 호를 제외한 경우에도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또는 공소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간단한 사실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사법경찰관이 송치·송부한 사건과 관련하여 다른 범죄혐의를 발견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그 내용을 통보하도록 함 (제196조제4항 및 제197조의5 신설).

마. 검사의 보완수사요구에 대하여 이행기한을 설정하도록 하고, 사법경찰관이 기한 내 이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연장을 신청하도록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보완수사요구를 지연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행 촉구, 직무배제 또는 징계 요구 등의 절차를 마련하여 보완수사요구의 실효성을 확보함(안 제197조의2).

바. 성폭력, 노인학대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의 경우에는 범죄를 수사한 사법경찰관이 범죄의 혐의를 발견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함(안 제245조의5제1호 다목 신설).

사. 사법경찰관의 불송치에 대하여 고발인도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이의신청이 가능한 사람은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에게 사건기록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며, 그에 대한 거부 사유와 신청인의 불복 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245조의7제2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의2제1항 및 제6항 중 “검찰청”을 각각 “공소청”으로 한다.

제6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2조(검사에 대한 송달) 검사에 대한 송달은 서류를 소속공소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67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중 “法定期間은 訴訟行爲를 할 者の 住居 또는 事務所의 所在地와 法院 또는 檢察廳 所在地”를 “법정기간은 소송행위를 할 자의 주거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와 법원 또는 공소청 소재지”로, “交通通信”을 “교통통신”으로, “大法院規則”을 “대법원규칙”으로 한다.

제67조(법정기간의 연장)

제8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4조(광역공소청장 또는 지방공소청장에 대한 소재확인촉탁) 피고인의 현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광역공소청장 또는 지방공소청장에게 그 소재확인과 구속영장의 집행을 촉탁할 수 있다.

제19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5조의2(중요·긴급사건에 대한 협력 의무 등) ①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이하 “중요·긴급사건”이라 한다)에 대하여 수사를 개시한 때에는 지체 없이 피의자, 범죄사실 요지 및 개시 경위 등을 검사와 공유하여야 한다.

1. 내란, 외환, 대공(對共), 테러, 대형참사 또는 살인 관련 사건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
3. 그 밖에 범죄의 중대성, 태양(態樣) 또는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건

② 사법경찰관은 중요·긴급사건의 경우 송치·송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검사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1. 범인에 관한 사항
2. 증거 또는 범죄사실 증명에 관한 사항
3. 소송조건 또는 처벌조건에 관한 사항
4. 양형자료에 관한 사항
5. 죄명 및 범죄사실의 구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사항

③ 검사는 공소유지에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공판에서 검사의 공소유지에 필요한 지원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제19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6조(검사의 수사) ① 검사는 수사를 개시할 수 없고 사법경찰관
(관련 법령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대하여 보완수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1
97조의2에 따라 보완수사요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검
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송치한 범죄와 동일
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수사를 할 수 있다.

1. 송치사건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특정강
력범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
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
토킹범죄

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
른 아동학대범죄

바.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

사.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5호에 따른 노인학대관련범죄

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에 따
른 가정폭력범죄

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선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

차.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유사수신행위

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2. 송치사건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가. 피의자 전부 또는 일부가 구속된 사건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

다. 2개 이상의 송치사건들이 관련사건에 해당하여 병합하여 결정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

라. 제197조의3제6항, 제198조의2제2항 및 제245조의7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

②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수사를 하는 경우 강제처분을 하려면 그 필요성에 대하여 소속 지방공소청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공소청법」 제21조에 따른 사건심의위원회는 제2항의 강제처분이 있는 후에 사건관계인(피의자, 고소인, 기관고발인, 피해자 및 그 변호인·대리인을 말한다)의 신청에 따라 그 적정성에 대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④ 검사는 송치사건 중 제1항 각 호를 제외한 경우에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또는 공소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

는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필요한 사실관계 확인을 할 수 있다.

1. 피의자, 사건관계인, 전문가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진술·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받는 방법

2. 공무소, 그 밖의 공사단체에 자료를 요청하여 회신받는 방법

제197조의2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중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를 “제2항에 따른 이행기한 내에”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검사가 제1항에 따라 보완수사요구를 할 때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이행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④ 사법경찰관은 제2항의 이행기한 내에 보완수사를 완료하기 곤란할 때에는 이행기한 만료 7일 전까지 검사에게 보완수사요구 이행기한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요구를 충실히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이행을 현저히 지연하는 때에는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보완수사요구의 요지를 기재한 문서를 첨부하여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관서의 장은 그 경위를 조사하여 검사에게 지연 등의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⑥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이행의 촉구에도 불

구하고 제1항의 요구가 이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권한 있는 사람에게 해당 사법경찰관의 직무배제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 직무배제 요구를 받은 경우: 요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사법경찰관을 직무배제하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요구자에게 통보

2. 징계 요구를 받은 경우: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징계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그 처리 결과와 이유를 요구자에게 통보

제197조의3제7항 중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을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장”으로 한다.

제197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7조의5(범죄혐의 통보)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송치·송부한 사건과 관련하여 다른 범죄혐의를 발견한 경우 수사기관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98조의2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8조의2(검사의 체포·구속장소감찰)

①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은 불법체포·구속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검사로 하여금 매월 1회 이상 관할 수사관서의 피의자의 체포·구속장소를 감찰하게 하여야 한다. 감찰하는 검사는 체포 또는

구속된 자를 심문하고 관련서류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201조의2제7항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제2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0조(사법경찰관리의 관할구역 외의 수사) 사법경찰관리가 관할구역 외에서 수사하거나 관할구역 외의 사법경찰관리의 촉탁을 받아 수사할 때에는 관할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00조의3, 제212조, 제214조, 제216조와 제217조에 따른 수사를 하는 경우에 긴급을 요할 때에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제214조의2제13항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제218조의2제2항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제221조의5제1항 중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고등검찰청”을 “광역공소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고등검찰청”을 “광역공소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고등검찰청 검사장”을 “광역공소청장”으로 한다.

제222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2조(변사자의 검시)

①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있는 사체가 있는 때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공소청 검사가 검시하여야 한다.

제24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3조(피의자신문과 참여자)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할 때에는 제245

조의9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소청 직원을 참여하게 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할 때에는 사법경찰관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제245조의3제3항 중 “고등검찰청검사장”을 “광역공소청장”으로 한다.

제245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중 “고소·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범죄”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을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으로 하며, 같은 호에 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고소·고발 외의 단서로 범죄를 인지하여 수사한 경우

다. 피의사실이 제196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해당 사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245조의7제1항 중 “사람(고발인을 제외한다)”을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사람은 불송치결정을 통지한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사건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45조의5제2호에 따라 검사에게 송부된 사건기록과 증거물이 아직 반환되지 아니한 때에는 열람·등사의 신청을 받은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해당 검사가 소속한 공소청에 신청서를 송

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1. 사건기록의 열람·등사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영업비밀이 부당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2. 사건기록의 열람·등사로 인하여 증거인멸·도주가 용이하게 되거나 관련 사건의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는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나머지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해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열람·등사를 허용하여야 한다.

⑤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는 사건기록의 열람·등사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와 불복방법을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신청인은 제5항에 따른 통지를 받는 때에는 제417조에 따라 해당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제245조의9의 제목 “(검찰청 직원)”을 “(공소청 직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검찰청 직원은”을 “공소청 직원은”으로,

“검찰청 직원의”를 “공소청 직원의”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① 4급 이하 공소청 직원으로서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장의 지명을 받은 사람은 소속 공소청의 「공소청법」 제55조제1항제1호의 사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직무를 수행한다.

1. 4급 이하 7급 이상 공소청 직원 : 사법경찰관의 직무

2. 8급 이하 공소청 직원 : 사법경찰리의 직무

제25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6조(타관송치) 검사는 사건이 그 소속공소청에 대응한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건을 서류와 증거물과 함께 관할법원에 대응한 공소청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제260조제1항 본문 중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검찰청법」 제10조”를 “「공소청법」 제57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261조의 제목 “(지방검찰청검사장 등의 처리)”를 “(지방공소청장 등의 처리)”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고등검찰청”을 “광역공소청”으로 하며,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262조제5항 전단 및 후단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을 각각 “지방공소

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337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7조(형의 소멸의 재판)

① 「형법」 제81조 또는 제82조에 따른 선고는 그 사건에 관한 기록이 보관되어 있는 공소청에 대응하는 법원에 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361조의2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피고인이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경우에는 원심법원에 대응한 공소청검사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피고인을 항소법원 소재지의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이송하여야 한다.

제417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중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의 拘禁, 押收 또는 押收物의 還付에 關한”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 압수 또는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으로, “처분에 對하여 不服”를 “처분 또는 제245조의7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사건 기록의 열람·등사 거부 또는 제한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으로, “職務執行地의 管轄法院 또는 檢事の 所屬檢察廳에 對應한 法院”를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 또는 검사의 소속공소청에 대응한 법원”으로 한다.

제417조(동전)

제4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28조(재심과 집행정지의 효력) 재심의 청구는 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다만, 관할법원에 대응한 공소청검사는 재심청구에 대한 재판이 있을 때까지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제46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60조(집행지휘) ① 재판의 집행은 그 재판을 한 법원에 대응한 공소청검사가 지휘한다. 다만, 재판의 성질상 법원 또는 법관이 지휘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상소의 재판 또는 상소의 취하로 인하여 하급법원의 재판을 집행할 경우에는 상소법원에 대응한 공소청검사가 지휘한다. 다만, 소송기록이 하급법원 또는 그 법원에 대응한 공소청에 있는 때에는 그 공소청검사가 지휘한다.

제467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67조(사형집행의 참여)

① 사형의 집행에는 검사와 4급 이상의 공소청 직원과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이나 그 대리자가 참여하여야 한다.

제46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68조(사형집행조서) 제467조제1항에 따라 사형의 집행에 참여한 공소청 직원은 집행조서를 작성하고 검사와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이나 그 대리자와 함께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470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70조(자유형집행의 정지)

①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가 심신의 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때에는 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한 공소청검사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공소청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심신장애가 회복될 때까지 형의 집행을 정지한다.

제471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檢事가 前項의 指揮”를 “검사가 제1항의 지휘”로, “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의 許可”를 “광역공소청장 또는 지방공소청장의 허가”로 한다.

제471조(동전)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한 공소청검사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공소청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제471조의2제1항 중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9조의2(재판확정기록의 열람 · 등사) ①누구든지 권리구제 · 학술연구 또는 공익적 목적 으로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소 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u>검찰</u> <u>청</u> 에 그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	제59조의2(재판확정기록의 열람 · 등사) ①----- ----- ----- ----- <u>공소</u> <u>청</u> ----- -----.
② ~ ⑤ (생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제1항에 따라 소송기록의 열 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자는 열람 또는 등사에 관한 검사의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당 해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u>검찰</u> <u>청</u> 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⑥----- ----- ----- ----- <u>공소</u> <u>청</u> ----- ----- -----.
⑦ (생략)	⑦ (현행과 같음)
<u>第62條(檢事에 對한 送達) 檢事</u> <u>에 對한 送達은 書類를 所屬檢</u> <u>察廳에 送付하여야 한다.</u>	<u>제62조(검사에 대한 송달) 검사</u> <u>에 대한 송달은 서류를 소속공</u> <u>소청에 송부하여야 한다.</u>
<u>第67條(法定期間의 연장) 法定期</u> <u>間은 訴訟行爲를 할 者의 住居</u> <u>또는 事務所의 所在地와 法院</u>	<u>제67조(법정기간의 연장) 법정기</u> <u>간은 소송행위를 할 자의 주거</u> <u>또는 사무소의 소재지와 법원</u>

또는 檢察廳 所在地와의 거리
및 交通通信의 불편정도에 따
라 大法院規則으로 이를 연장
할 수 있다.

第84條(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에 對한 搜查
囑託) 被告人의 現在地가 分明
하지 아니한 때에는 裁判長은
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
찰청검사장에게 그 搜查와 拘
束令狀의 執行을 囑託할 수 있
다.

<신 설>

또는 공소청 소재지-----
--교통통신-----
--대법원규칙-----
-----.

제84조(광역공소청장 또는 지방
공소청장에 對한 소재확인촉
탁) 피고인의 현재지가 분명하
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광
역공소청장 또는 지방공소청장
에게 그 소재확인과 구속영장
의 집행을 촉탁할 수 있다.

제195조의2(중요·긴급사건에 대
한 협력 의무 등) ① 사법경찰
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건(이하 “중요
· 긴급사건”이라 한다)에 대하
여 수사를 개시한 때에는 지체
없이 피의자, 범죄사실 요지
및 개시 경위 등을 검사와 공
유하여야 한다.

1. 내란, 외환, 대공(對共), 테
러, 대형참사 또는 살인 관련
사건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소
시효가 임박한 사건

3. 그 밖에 범죄의 중대성, 태양(態樣) 또는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건

② 사법경찰관은 중요·긴급사건의 경우 송치·송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검사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1. 범인에 관한 사항

2. 증거 또는 범죄사실 증명에 관한 사항

3. 소송조건 또는 처벌조건에 관한 사항

4. 양형자료에 관한 사항

5. 죄명 및 범죄사실의 구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사항

③ 검사는 공소유지에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공판에서 검사의 공소유지에 필요한 지원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

제196조(검사의 수사) ①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

에 응하여야 한다.

제196조(검사의 수사) ① 검사는 수사를 개시할 수 없고 사법경찰관(관련 법령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대하여 보완수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197조의2에 따라 보완수사요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송치한 범죄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수사를 할 수 있다.

1. 송치사건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특정강력범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
에 관한 법률」 제2조제2
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제2
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
범죄

바.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
관련범죄

사. 「노인복지법」 제1조의
2제5호에 따른 노인학대
관련범죄

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제2
조제3호에 따른 가정폭력
범죄

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
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
급에 관한 특별법」 제2
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
금융사기

차. 「유사수신행위의 규제
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유사수신행위

② 검사는 제197조의3제6항, 제198조의2제2항 및 제245조의7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관하여는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다.

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2. 송치사건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가. 피의자 전부 또는 일부가 구속된 사건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

다. 2개 이상의 송치사건들이 관련사건에 해당하여 병합하여 결정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

라. 제197조의3제6항, 제198조의2제2항 및 제245조의7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

②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수사를 하는 경우 강제처분을 하려면 그 필요성에 대하여 소속 지방공소청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 설>

<신 설>

제197조의2(보완수사요구) ① (생략)

<신 설>

③ 「공소청법」 제21조에 따른 사건심의위원회는 제2항의 강제처분이 있는 후에 사건관계인(피의자, 고소인, 기관고발인, 피해자 및 그 변호인·대리인을 말한다)의 신청에 따라 적정성에 대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④ 검사는 송치사건 중 제1항 각 호를 제외한 경우에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또는 공소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필요한 사실관계 확인을 할 수 있다.

1. 피의자, 사건관계인, 전문가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진술·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받는 방법

2. 공무소, 그 밖의 공사단체에 자료를 요청하여 회신받는 방법

제197조의2(보완수사요구) ① (현행과 같음)

② 검사가 제1항에 따라 보완수사요구를 할 때에는 3개월의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은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권한 있는 사람에게 해당 사법경찰관의 직무배제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그 징계 절차는 「공무원 징계령」 또는 「경찰공무원 징계령」에 따른다.

<신 설>

<신 설>

범위에서 이행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③ -----
-----제2항에 따른
이행기한 내에 -----

-----.

<삭 제>

④ 사법경찰관은 제2항의 이행기한 내에 보완수사를 완료하기 곤란할 때에는 이행기한 만료 7일 전까지 검사에게 보완수사요구 이행기한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요구를 충실히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이행을 현저히 지연하는 때

<신 설>

<신 설>

에는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보완수사요구의 요지를 기재한 문서를 첨부하여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관서의 장은 그 경위를 조사하여 검사에게 지연 등의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⑥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이행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요구가 이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권한 있는 사람에게 해당 사법경찰관의 직무배제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 직무배제 요구를 받은 경우:

요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사법경찰관을 직무배제하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요구자에게 통보

2. 징계 요구를 받은 경우: 요

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징계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그 처리 결과와 이유를

제197조의3(시정조치요구 등) ①
~ ⑥ (생략)

⑦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은 사법경찰관리의 수사
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있
었던 때에는 권한 있는 사람에
게 해당 사법경찰관리의 징계
를 요구할 수 있고, 그 징계
절차는 「공무원 징계령」 또
는 「경찰공무원 징계령」에
따른다.

⑧ (생략)

<신설>

第198條의2(檢事の 逮捕・拘束場
所監察) ①地方檢察廳 檢事長
또는 支廳長은 不法逮捕・拘束
의 有無를 調査하기 爲하여 檢
事로 하여금 每月 1回 以上 管
下搜查官署의 被疑者의 逮捕・
拘束場所를 監察하게 하여야

요구자에게 통보

제197조의3(시정조치요구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장-

-----.

⑧ (현행과 같음)

제197조의5(범죄혐의 통보) 검사
는 사법경찰관이 송치·송부한
사건과 관련하여 다른 범죄혐
의를 발견한 경우 수사기관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98조의2(검사의 체포·구속장
소감찰) ①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은 불법체포·구속의 유
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검사로
하여금 매월 1회 이상 관할 수
사관서의 피의자의 체포·구속
장소를 감찰하게 하여야 한다.

한다. 監察하는 檢事는 逮捕 또는 拘束된 者를 審問하고 關聯書類를 調査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① ~ ⑥ (생략)

⑦ 피의자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202조 및 제203조의 적용에 있어서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⑧ ~ ⑩ (생략)

第210條(司法警察官吏의 管轄區域 外의 搜查) 司法警察官吏가 管轄區域 外에서 搜查하거나 管轄區域 外의 司法警察官吏의 囑託을 받아 搜查할 때에는 管轄地方檢察廳 檢事長 또는 支廳長에게 報告하여야 한다. 다만, 第200條의3, 第212條, 第214條, 第216條와 第217條의 規定에 依한 搜查를 하는 境遇에

감찰하는 檢사는 체포 또는 구속된 자를 심문하고 관련서류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공소청-----

-----.

⑧ ~ ⑩ (현행과 같음)

제210조(사법경찰관리의 관할구역 외의 수사) 사법경찰관리가 관할구역 외에서 수사하거나 관할구역 외의 사법경찰관리의 촉탁을 받아 수사할 때에는 관할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00조의3, 제212조, 제214조, 제216조와 제217조에 따른 수사를 하는 경우에 긴급을 요할

緊急을 要할 때에는 事後에 報告할 수 있다.

第214條의2(체포와 구속의 적부 심사) ① ~ ⑫ (생략)

⑬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 제200조의2제5항(제213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00조의4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그 제한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제202조·제203조 및 제205조를 적용할 때에는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⑭ (생략)

제218조의2(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① (생략)

② 제1항의 청구에 대하여 검사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은 해당 검사의 소속 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압수물의 환부 또는 가환부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③·④ (생략)

제221조의5(사법경찰관이 신청한

때에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제214조의2(체포와 구속의 적부 심사) ① ~ ⑫ (현행과 같음)

⑬-----

공소청-----

-----.

⑭ (현행과 같음)

제218조의2(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① (현행과 같음)

② -----

-----공
소청-----

-----.

③·④ (현행과 같음)

제221조의5(사법경찰관이 신청한

檢事가 被疑者를 訊問함에는 檢察廳搜查官 또는 서기관이나 서기를 參與하게 하여야 하고 司法警察官이 被疑者를 訊問함에는 司法警察官吏를 參與하게 하여야 한다.

제245조의3(전문수사자문위원 지정 등) ①·② (생략)

③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검사의 전문수사자문위원 지정에 대하여 관할 고등검찰청검사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⑤ (생략)

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사법경찰관은 고소·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신 설>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할 때에는 제245조의9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소청 직원을 참여하게 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할 때에는 사법경찰관리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제245조의3(전문수사자문위원 지정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광역공소청장-----
-----.

④·⑤ (현행과 같음)

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범죄-----

-----.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

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 설>

<신 설>

2. (생 략)

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①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사람(고발인을 제외한다)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신 설>

나. 고소·고발 외의 단서로 범죄를 인지하여 수사한 경우

다. 피의사실이 제196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해당 사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2. (현행과 같음)

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① -----
---사람-----

-----.

②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사람은 불송치결정을 통지한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사건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45조의5제2호에 따라 검사에게 송부된 사건기록과 증거물이 아직 반환되지 아니한 때에는 열람·등사의 신청을 받은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해당 검

<신 설>

<신 설>

사가 소속한 공소청에 신청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1. 사건기록의 열람·등사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영업비밀이 부당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2. 사건기록의 열람·등사로 인하여 증거인멸·도주가 용이하게 되거나 관련 사건의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는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나머지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신 설>

<신 설>

② (생 략)

제245조의9(검찰청 직원) ① 검
찰청 직원으로서 사법경찰관리
의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 직
무의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따라 해당 부분을 제외한 나머
지 부분의 열람·등사를 허용
하여야 한다.

⑤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는 사
건기록의 열람·등사를 거부하
거나 그 범위를 제한하는 경우
에는 그 이유와 불복방법을 서
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신청인은 제5항에 따른 통
지를 받는 때에는 제417조에
따라 해당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⑦ (현행 제2항과 같음)

제245조의9(공소청 직원) ① 4급
이하 공소청 직원으로서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장의 지명을
받은 사람은 소속 공소청의
「공소청법」 제55조제1항제1
호의 사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직무를 수행
한다.

1. 4급 이하 7급 이상 공소청
직원 : 사법경찰관의 직무
2. 8급 이하 공소청 직원 : 사
법경찰리의 직무

②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하는 검찰청 직원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하여야 한다.

③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하는 검찰청 직원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하는 검찰청 직원의 수사를 보조하여야 한다.

④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검찰청 직원에 대하여는 제197조의2부터 제197조의4까지, 제221조의5, 제245조의5부터 제245조의8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第256條(他管送致) 檢事は 事件이 그 所屬檢察廳에 對應한 法院의 管轄에 屬하지 아니한 때에는 事件을 書類와 證據物과 함께 管轄法院에 對應한 檢察廳檢事에게 送致하여야 한다.

제260조(재정신청) ①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형법」 제123조부터 제126조까지의 죄에 대하여는 고발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② -----
--공소청-----
-----.

③ -----
--공소청 직원은-----

공소청 직원의-----
-----.

④ -----
----공소청-----

-----.

제256조(타관송치) 검사는 사건이 그 소속공소청에 대응한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건을 서류와 증거물과 함께 관할법원에 대응한 공소청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제260조(재정신청) ①-----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하 “관할 고등법원”이라 한다)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형법」 제126조의 죄에 대하여는 피공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재정을 신청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하려면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3호의 경우에는 공소시효 만료일 전일까지 재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지방공소청

② 「공소청법」 제57조

1. ~ 3. (현행과 같음)

③ 지방공소청장

④ (생략)

제261조 지방검찰청검사장 등의
처리) 제260조제3항에 따라 재
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검찰
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재정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정신청서·의견서·
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관할 고등검찰청을 경유하여
관할 고등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6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다.

1. · 2. (생략)

제262조(심리와 결정) ① ~ ④
(생략)

⑤ 법원은 제2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즉시 그 정본을 재정신청인·피의자와 관할 지방법원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 제2호의 결정을 한 때에는 관할 지방법원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사건기록을 함께 송

④ (현행과 같음)

제261조 (지방공소청장 등의 처리)

-----지방공소

청장-----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장-----

1. · 2. (현행과 같음)

제262조(심리와 결정)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지방공소
청장-----
-----.

-----지방공소청장-----

부하여야 한다.

⑥ 제2항제2호의 결정에 따른 재정결정서를 송부받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지체 없이 담당 검사를 지정하고 지정받은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第337條(刑의 消滅의 裁判) ①

「형법」 第81條 또는 同 第82條의 規定에 依한 宣告는 그 事件에 關한 記錄이 保管되어 있는 檢察廳에 對應하는 法院에 對하여 申請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第361條의2(訴訟記錄接受와 通知) ① · ② (생략)

③被告人이 矯導所 또는 拘置所에 있는 경우에는 原審法院에 대응한 檢察廳檢事는 第1項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日이내에 被告人을 抗訴法院所在地의 矯導所 또는 拘置所에 移送하여야 한다.

第417條(同前)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의 拘禁, 押收 또는 押收物의 還付에 關한 처분과 제24

-----.

⑥-----

지방공소청장-----

-----.

제337조(형의 소멸의 재판) ①

「형법」 제81조 또는 제82조에 따른 선고는 그 사건에 관한 기록이 보관되어 있는 공소청에 대응하는 법원에 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361조의2(소송기록접수와 통지)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피고인이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경우에는 원심법원에 대응한 공소청검사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피고인을 항소법원 소재지의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이송하여야 한다.

제417조(동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 압수 또는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3조의2에 따른 변호인의 참여 등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不服이 있으면 그 職務執行地의 管轄法院 또는 檢事の 所屬檢察廳에 對應한 法院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第428條(再審과 執行停止의 效力) 再審의 請求는 刑의 執行을 停止하는 效力이 없다. 但 管轄法院에 對應한 檢察廳檢事는 再審請求에 對한 裁判이 있을 때까지 刑의 執行을 停止할 수 있다.

第460條(執行指揮) ①裁判의 執行은 그 裁判을 한 法院에 對應한 檢察廳檢事が 指揮한다. 但, 裁判의 性質上 法院 또는 法官이 指揮할 境遇에는 例外로 한다.

②上訴의 裁判 또는 上訴의 取下로 因하여 下級法院의 裁判을 執行할 境遇에는 上訴法院에 對應한 檢察廳檢事が 指揮

-----처분 또는 제245조의7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사건 기록의 열람·등사 거부 또는 제한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직무집행지의 관할 법원 또는 검사의 소속공소청에 대응한 법원-----
-----.

제428조(재심과 집행정지의 효력) 재심의 청구는 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다만, 관할법원에 대응한 공소청 검사는 재심청구에 대한 재판이 있을 때까지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제460조(집행지휘) ① 재판의 집행은 그 재판을 한 법원에 대응한 공소청검사가 지휘한다. 다만, 재판의 성질상 법원 또는 법관이 지휘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상소의 재판 또는 상소의 취하로 인하여 하급법원의 재판을 집행할 경우에는 상소법원에 대응한 공소청검사가 지

한다. 但, 訴訟記錄이 下級法院 또는 그 法院에 對應한 檢察廳에 있는 때에는 그 檢察廳檢事が 指揮한다.

第467條(死刑執行의 參與) ①死刑의 執行에는 檢事와 檢察廳書記官과 矯導所長 또는 拘置所長이나 그 代理者가 參與하여야 한다.

② (생략)

第468條(死刑執行調書) 死刑의 執行에 參與한 檢察廳書記官은 執行調書를 作成하고 檢事와 矯導所長 또는 拘置所長이나 그 代理者와 함께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第470條(自由刑執行의 停止) ①懲役, 禁錮 또는 拘留의 宣告를 받은 者가 心神의 障礙로 意思能力이 없는 狀態에 있는 때에는 刑을 宣告한 法院에 對應한 檢察廳檢事 또는 刑의 宣告를 받은 者의 現在地를 管轄하는 檢察廳檢事の 指揮에 依하여 心神障礙가 回復될 때까지

휘한다. 다만, 소송기록이 하급 법원 또는 그 법원에 대응한 공소청에 있는 때에는 그 공소청검사가 지휘한다.

제467조(사형집행의 참여) ① 사형의 집행에는 검사와 4급 이상의 공소청 직원과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이나 그 대리자가 참여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468조(사형집행조서) 제467조 제1항에 따라 사형의 집행에 참여한 공소청 직원은 집행조서를 작성하고 검사와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이나 그 대리자와 함께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470조(자유형집행의 정지) ①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 받은 자가 심신의 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때에는 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한 공소청검사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공소청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심신장애가 회복될 때까지

지 刑의 執行을 停止한다.

②·③ (생략)

第471條(同前) ①懲役, 禁錮 또는 拘留의 宣告를 받은 者에 對하여 다음 각 號의 1에 該當한 事由가 있는 때에는 刑을 宣告한 法院에 對應한 檢察廳檢事 또는 刑의 宣告를 받은 者의 現在地를 管轄하는 檢察廳檢事の 指揮에 依하여 刑의 執行을 停止할 수 있다.

1. ~ 7. (생략)

②檢事が 前項의 指揮를 함에 는 소속 高等檢찰청검사장 또는 지방檢찰청검사장의 許可를 얻어야 한다.

제471조의2(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① 제471조제1항제1호의 형집행정지 및 그 연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지방檢찰청에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학계, 법조

지 형의 집행을 정지한다.

②·③ (현행과 같음)

제471조(동전) ①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한 공소청검사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공소청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1. ~ 7. (현행과 같음)

②검사가 제1항의 지휘-----
-----광역공소청장 또는 지방공소청장의 허가-----
-----.

제471조의2(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① -----

-----지
방공소청-----

-----.

② -----

계, 의료계, 시민단체 인사 등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 서 각 <u>지방검찰청 검사장</u>이 임 명 또는 위촉한다. ③ (생 략)	----- ----- -----<u>지방공소청장</u>----- -----. ③ (현행과 같음)
---	---